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70
--------	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1. 9  
발 의 자 : 옥영복 의원의 6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07.5.17)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7.10.4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2007년도 「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」에서 결정된 2008년도 의원 월정수당 조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변경 (안 제1조)
- 나. 월정수당 금액 조정 (안 제3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 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
- 나. 불 임 :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 공문 사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로 하고 “동법 시행령 제15조”를 “같은법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월정수당은 1,490,000원”을 “월정수당은 1,800,00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